

[포커스 칼럼] 탄소국경조정과 배출권거래

임성택 대표변호사(지평 ESG센터장)

지난 4월 18일 유럽의회는 중요한 기후환경 법률들을 채택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도입하고,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를 개혁하며,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¹⁾을 설치하는 법안이다. 그 중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찬성 487표, 반대 81표, 기권 75표로 가결되었다. 유럽의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EU 산업을 보호하고 글로벌 기후 야망을 높이는 도구”라고 설명했다.

유럽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한다는 대담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2021년 7월 입법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했고, 이번에 관련 법안들을 채택한 것이다. EU의 배출권거래제(ETS)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탄소가격제도를 살펴보자.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탄소배출에 가격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탄소가 배출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탄소를 배출하는 주체에게 이러한 비용을 부담케 하여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려는 것이다. 탄소가격에는 세가지가 있다.

[탄소가격제도의 종류와 내용]

방법	특징
탄소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산 및 수입 상품에 모두 적용-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 간접세 형태(ex.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스웨덴, 캐나다, 스위스,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27개국 시행(2021 기준)

<p>배출권거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량의 여분 또는 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정부가 가격을 설정하는 탄소세와는 달리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배출권의 가격이 결정됨. 기업이 배출량을 줄이면 추가적인 이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제도 - 할당은 유상할당(유상으로 배출권 판매)과 무상할당(무상으로 배출권을 분배)으로 나뉨 - 전국 단위 실행 9개 국가, 지역단위 실행 19개 국가(2021년 기준)
<p>탄소국경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 상품에 부과하는 탄소비용에 상응하여 수입상품에 탄소비용을 부과

[배출권거래 개념]



※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이번에 승인된 EU 배출권거래제 개정안은 파격적이다. 배출량 감축목표를 크게 늘리고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적용분야를 확대하였다. 무상할당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현재 EU의 무상할당 비율은 43%, 참고로 한국은 90%가 무상할당임). 해상분야를 포함하고 항공분야의 무상할당을 폐지한다. 운송과

건물을 포함시켜 별도의 배출권거래제를 적용한다. 그야말로 전방위적이다.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려는 배경에는 이러한 규제 강화가 전제되어 있다. EU 역내에서 탄소비용이 증가하면 ‘탄소누출’(carbon leakage) 리스크가 커진다. 탄소누출이란 탄소규제가 심해질 때 역내 기업들이 규제가 느슨한 역외 국가로 생산활동을 이전하거나, 가격경쟁력이 뒤쳐지는 EU 생산제품이 탄소집약적인 수입품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수입품에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탄소국경조정제도이다.

[탄소국경조정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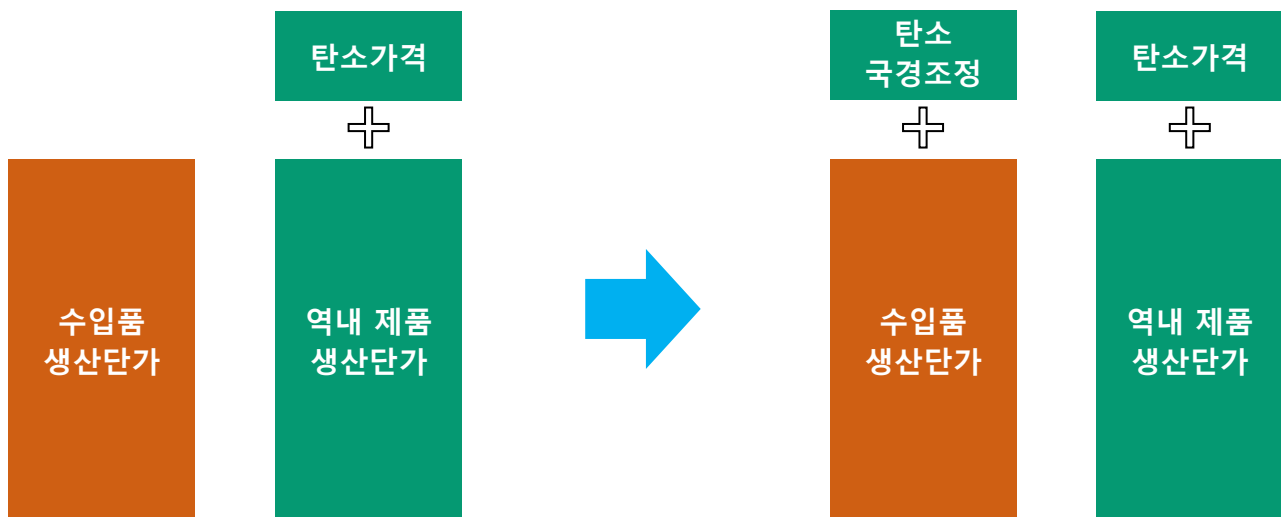


그림 1 | 탄소국경조정 개념

EU의회가 이번에 채택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기존의 EU집행위원회 안보다 강화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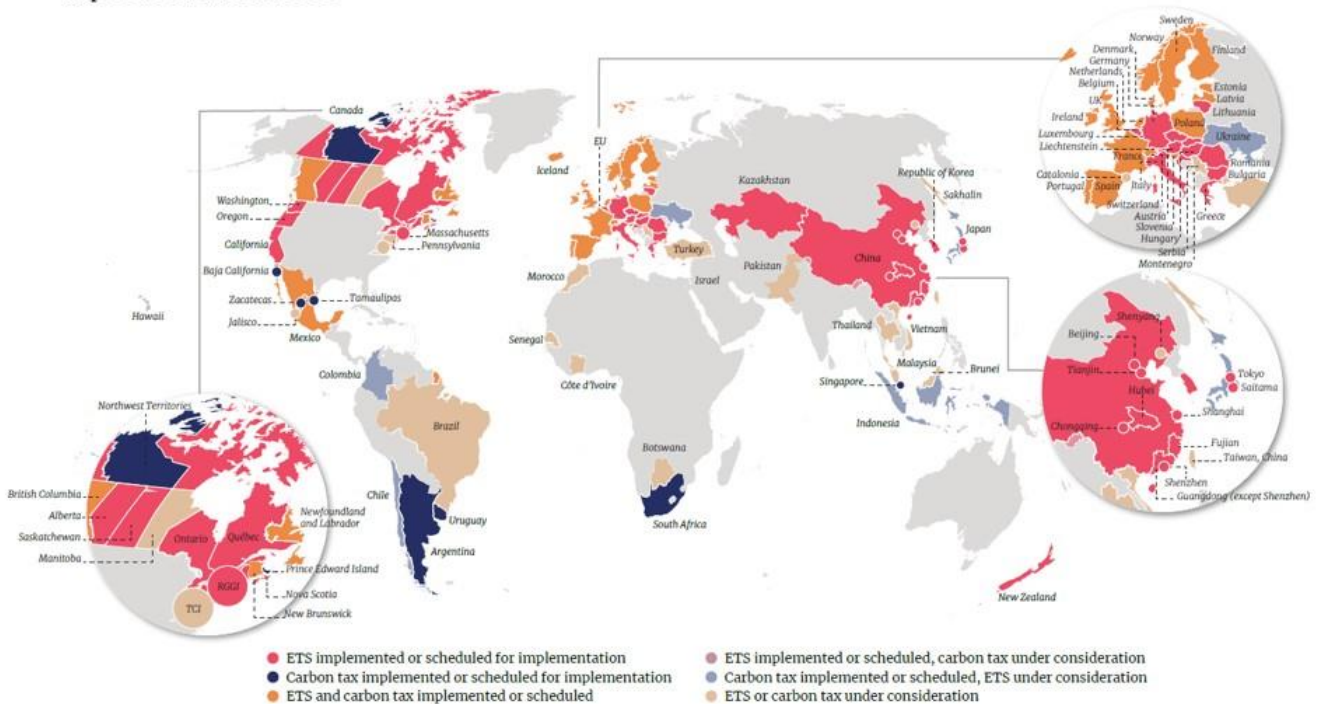
구분	EU집행위(안) (’21. 7. 14.)	EU의회 승인안 (’23. 4. 18.)
----	---------------------------	---------------------------

적용 대상	5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6개 (집행위(안) 대상 품목 + 수소)
시행 시점	'26. 1. ~	'26. 1. ~
전환기간	'23~'25년(3년)	'23. 10. ~ '25년(2년 3개월)
운영방식	회원국 개별 운영	중앙 집중식 운영(중앙등록처 신설)
배출량 범위	직접배출	직접배출 + 특정조건에서의 간접배출
ETS 감축 목표	'30년까지 '05년 대비 61% 감축	'30년까지 '05년 대비 62% 감축
ETS 무상할당 폐지	'26~'35년 (10년)	'26~'34년 (9년)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적용 대상은 우선 6개 분야이지만, 2030년까지 ETS 무상할당 폐지와 연동해 모든 ETS 대상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3년 10월부터 적용되지만 이른바 ‘전환기간’인 2025년말까지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발생한다. 2026년부터 수입품의 배출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탄소배출은 통상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을 구분하는데, 생산단계의 직접배출 외에도 생산을 위한 전기와 동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간접배출까지 특정조건에서 포함시키고 있다. CBAM 인증서의 가격은 EU ETS 배출권의 주간 평균 경매가격에 따라 계산된다. 다만 원산지에서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에 따라 탄소가격을 부담한 경우에는 감면된다.

EU에서 시작된 기후규제는 다른 나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특정 분야의 수입품에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청정경쟁법(S.4355 Clean Competition Act)’ 및 ‘공정한 전환과 경쟁법(H.R.4534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이 그것이다. 캐나다, 일본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는 기후전쟁을 시작했다. 아래의 표는 세계의 탄소가격제 추진현황이다.

FIGURE 1
Map of carbon taxes and ETSs



※ 출처: World Bank

이러한 국제통상질서의 변화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과감한 투자를 통해 탄소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우리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개선하고 탄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및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국제무역의 흐름에서 우리 기업들이 뒤쳐지지 않도록 탄소배출량 측정 지원부터 저탄소제품 개발과 친환경 시장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기업들도 보다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변화해야 한다. 탄소경쟁력을 강화하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이 필요하다. ESG를 강화하는 것이 곧 경쟁력인 시대가 온 것이다.

1) 엄격한 기후규제와 에너지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867억 유로를 조성할 것을 계획함. 구체적으로는 도로운송과 건물 부문의 배출권거래제 개정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가정, 소기업, 대중교통 이용자 등에 대한 비용감소 등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임

[심층 브리핑] 통상규제 이슈 브리핑: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강보원 연구원(지평 통상자문센터)

서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로 인해 EU의 기후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립된 제도입니다. 탄소누출이란 온실가스 배출이 느슨한 기후 정책을 가진 국가로 이전하며 엄격한 기후 정책을 갖춘 국가의 노력을 무효화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EU CBAM 규정은 2023년 5월 16일 발효했으며,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단계(definitive phase)입니다.

2023년 8월 17일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전환기간에 대한 CBAM 이행규정(이하 'CBAM 이행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전환기간동안 EU 수입업자의 의무는 보고의무로 제한되며, 보고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EU로 적용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자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것입니다.

본 브리핑은 CBAM 규정의 주요 내용, CBAM 이행규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수출기업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BAM 주요 내용

2023년 5월 16일 발효한 CBAM 규정의 적용대상 품목은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로 총 여섯 가지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EU의 적용제품 수입업자는 CBAM 등록부(CBAM registry)를 통해 관할당국에 직전 연도에 대한 CBAM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내재배출량에 대한 CBAM 인증서(CBAM certificates)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공정하다고 간주되는 역외 수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듯이,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수출국의 느슨한 기후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무역 보조를 받는 수출품으로 인한 무역 왜곡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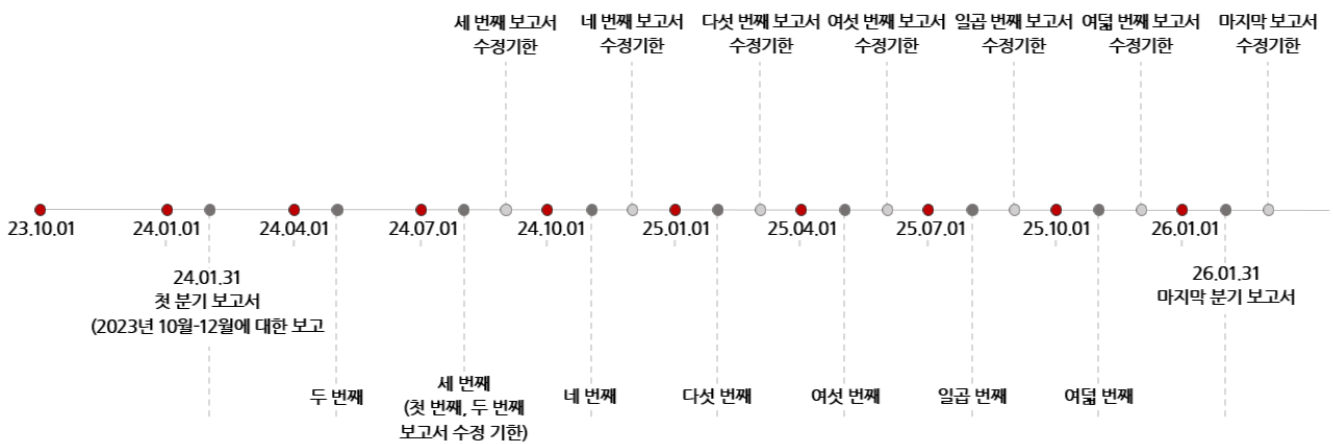
Regulation (EU) 2023/956 (CBAM 규정)	
조항	주요 내용
제2조	적용대상: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부속서 I 참조)
제5조	<p>승인신청: CBAM 적용제품을 수입하려는 수입자는 관할당국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신청서에는 신청자에 대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름, 주소, 연락처 EORI 번호 (세관등록번호) 유럽연합에서 수행되는 주요 사업 활동 신청자가 체납자가 아니라는 세무 당국에 의한 증빙 신청연도로부터 5년 전까지 신청자가 관세, 세법이나 형법을 어긴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선언 CBAM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신청자의 재정 및 운영 능력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 (예를 들어, 지난 3개 회계연도의 재무정보) 해당 연도 및 미래에 수입되는 상품의 예상 가치 및 수량
제6조	<p>2027년부터 (2026년도에 대한 신고) 매년 5월 31일까지 승인된 CBAM 신고자(수입자)는 관할당국에 직전 연도에 대한 CBAM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CBAM 신고서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품 유형별 총량 (전력의 경우, MWh 단위; 기타 제품의 경우, 톤 단위) 수입품 유형별 총 내재배출량 제출할 CBAM 인증서 개수 검증 보고서 사본
제7조	내재배출량 산정방법 (부속서 IV 참조)
제8조	승인된 CBAM 신고자는 CBAM 신고서에 신고된 총 내재배출량이 공인 검증자로부터 검증되었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9조	승인된 CBAM 신고자는 수입품 원산지국에서 지불한 탄소 가격을 고려해 제출할 CBAM 인증서 개수를 차감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p>EU 외 지역에 위치한 수출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집행위는 수출업자의 정보를 CBAM 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업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 각 시설의 정확한 위치 ▪ 주요 사업 활동 <p>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수출업자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내재배출량을 산정해야 하고 ▪ 위 내재배출량이 공인 검증자로부터 검증될 것을 보장해야 하고 ▪ 검증보고서 및 내재배출량 산정에 사용된 정보를 검증일로부터 4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4조	<p>집행위는 전자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CBAM 등록부를 만들어 승인된 CBAM 신고자의 CBAM 인증서에 대한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p>
제20조 제21조	<p>관할당국은 승인된 CBAM 신고자들에게 CBAM 인증서를 EU ETS (EU 배출권거래제) 배출권의 주간 거래증가 평균으로 산정된 가격에 판매해야 한다.</p>
제22조	<p>승인된 CBAM 신고자는 2027년부터 매년 5월 31일까지 직전 연도에 대해 신고된 내재배출량에 따른 개수의 CBAM 인증서를 관할당국에 제출해야 한다.</p>
제26조	<p>승인된 CBAM 신고자가 5월 31일까지 CBAM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p>
제32조	<p>전환기간(2023.10.01 - 2025.12.31) 동안 수입자의 의무는 보고의무로 제한된다.</p>
제35조	<p>보고의무:</p> <p>수입자는 분기별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CBAM 보고서를 작성해 집행위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 기한은 해당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이다.</p> <p>CBAM 보고서는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품 유형별 총량 ▪ 실제 총 내재배출량 ▪ 이행법률에 따라 산정된 총 간접배출량 ▪ 수입품 원산지국에 지불해야 할 탄소 가격 <p>관할당국은 수입자가 CBAM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제출된 보고서를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p> <p>집행위는 다음 사항에 대한 위임법률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되어야 할 정보, 보고의 수단 및 형식 ▪ 과태료 범위 및 산정 시 고려해야 할 기준 ▪ 탄소 가격 환산에 대한 자세한 규칙 ▪ 부속서 IV에서의 내재배출량 산정방법의 요소에 대한 자세한 규칙 ▪ 수입품의 간접 배출에 대한 보고 요건에 대한 수단 및 형식

CBAM 이행규정 주요 내용

CBAM 규정 제35조에 따라 집행위는 2023년 8월 17일 CBAM 이행규정을 채택했습니다. CBAM 이행규정에서의 전환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고 EU 수입업자에 대해 분기별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고해야 하는 분기는 총 아홉 개의 분기이고, 보고기한은 해당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첫 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은 2024년 1월 31일이고, 마지막 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은 2026년 1월 31일입니다. 보고서 수정기한은 해당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이지만, 첫 두 개의 보고서의 수정기한은 세 번째 분기 보고서의 제출기한입니다.

전환기간 (2023. 10. 01 – 2025. 12. 31)



EU 관할당국은 EU 수입업자가 CBAM 이행규정의 보고의무나 보고서 수정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EU 수입업자는 보고의무나 수정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적용제품을 EU에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것입니다.

CBAM Implementing Regulation for the transitional phase (CBAM 이행규정)

조항	주요 내용
----	-------

제3조 1항	<p>수입자는 해당 분기 수입한 CBAM 적용제품에 대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품 총량 CN 코드로 식별되는 제품 유형
제3조 2항	<p>수입자는 해당 제품의 내재배출량에 대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품의 원산지국 제품이 생산된 시설 (UN/LOCODE, 회사명, 주소, 주요배출원의 지리적 좌표) 생산경로 (본 규정 부속서 II 섹션 3 참조) 특정 직접 내재배출량 (본 규정 부속서 III 섹션 F 및 G 참조) 제품의 내재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보고 요건 (본 규정 부속서 IV 섹션 2 참조) 수입품이 전력인 경우: (1) 배출계수 (MWh당 톤) (본 규정 부속서 III 섹션 D 참조), (2) 배출계수를 산정하는 데 사용된 데이터 소스 또는 방법 철강 제품의 경우, 특정 제철소의 식별번호 (알려진 경우)
제3조 3항	<p>특정 간접 내재배출량의 경우, 수입자는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공정의 전력 소비량 (제품 1톤당 MWh) 실제 배출량을 보고하는 것인지 집행위가 제공한 기본값을 보고하는 것인지 여부 소비된 전력의 배출계수 특정 간접 내재배출량 (본 규정 부속서 III 섹션 F 및 G 참조)
제4조 1항	<p>제품의 특정 내재배출량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본 규정 부속서 III B.2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산 기반 방법론 측정 기반 방법론
제4조 2항	<p>제4조 1항에 대한 완화규정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품의 특정 내재배출량은 다음 모니터링 및 보고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4조 1항에 따라 도출한 배출량 데이터의 범위와 정확성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탄소 가격 체계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의무적 배출 모니터링 제도 공인 검증자의 검증을 포함할 수 있는 해당 시설의 배출 모니터링 체계
제4조 3항	<p>제4조 1항과 2항에 대한 완화규정으로, 2024년 7월 31일까지, 신고자는 집행위에서 제공하는 기본값을 포함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p>
제5조	<p>제4조에 대한 완화규정으로, 복합제품의 총 내재배출량의 최대 20%까지는 시설 운영자가 제공하는 추정치를 기반으로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p>
제6조	<p>내부공정을 거친 제품의 경우, 자유 유통을 위해 출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2023년 10월 1일 전에 내부공정을 거친 제품도 CBAM 보고서에 보고되어야 할 수 있음).</p>

제7조	<p>해당되는 경우, 수입자는 CBAM 보고서에 제품 원산지국에 지불해야 할 탄소 가격에 대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N 코드로 표시되는 제품 유형 ▪ 탄소 가격의 유형 ▪ 해당 국가 ▪ 탄소 가격의 인하를 가져올 수 있는 리베이트 또는 기타 가능한 모든 형태의 보상 ▪ 지불해야 할 탄소가격의 금액 (유로) ▪ 관련 법률 ▪ 가격에 포함되는 직간접 내재배출량 ▪ 리베이트 또는 다른 형태의 보상이 적용되는 내재배출량 (무상할당 포함)
제8조	<p>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 분기마다 수입자는 해당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CBAM 보고서를 CBAM 전환 등록부에 제출해야 한다.</p>
제9조	<p>수입자는 해당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한 CBAM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완화규정으로, 첫 두 개의 보고서 수정기한은 세 번째 CBAM 보고서의 기한으로 한다.)</p>
제16조 1항	<p>다음의 경우, 관할당국은 과태료를 부과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가 CBAM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관련 조항에 따라 관할당국이 수정 절차를 개시한 경우, 수입자가 CBAM 보고서를 수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제16조 2항	<p>과태료 금액은 미보고 배출량 1톤당 10유로에서 50유로 사이로 한다.</p>
제16조 3항	<p>과태료 산정 시, 관할당국은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보고 정보의 범위 ▪ 미보고된 수입 제품의 수량 및 해당 제품 관련 미보고된 배출량 ▪ 수입자가 정보 요청에 응하거나 CBAM 보고서를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 수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 행위 ▪ 보고 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의 과거 행적 ▪ 위반 행위를 종료하기 위한 수입자의 협조 수준 ▪ 향후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CBAM 적용 제품을 EU에 수출하려는 국내기업의 의무

국내기업이 EU 회원국에 CBAM 적용제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입업자에게 관련 데이터를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적용제품 생산업체들은 내재배출량 산정에 중요한 데이터들을 모니터링하고 수입업자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집행위는 CBAM 이행규정과 함께 수출업자들이 수입업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템플릿(링크)을 제공했습니다.

EU 수입업자가 가장 관심을 갖는 주요 데이터는 특정 내재배출량(SEE_g)입니다. 특정 내재배출량은 제품 1톤에 내재된 배출량입니다.

CBAM 규정 부속서 IV에 따르면, 특정 내재배출량의 산정식은 제품이 단순제품인지 복합제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제품은 내재배출량이 전혀 없는 전구체(precursors)와 연료만을 투입한 생산 공정으로 생산된 제품입니다.

단순제품		복합제품	
$SEE_g = \frac{AttrEm_g}{AL_g}$		$SEE_g = \frac{AttrEm_g + EE_{InpMat}}{AL_g}$	
<i>SEE_g</i>	특정 내재배출량	<i>SEE_g</i>	특정 내재배출량
<i>AttrEm_g</i>	귀속배출량	<i>AttrEm_g</i>	귀속배출량
<i>AL_g</i>	제품생산량 (t)	<i>EE_{InpMat}</i>	생산공정에 투입된 투입물질 (전구체)의 내재배출량
		<i>AL_g</i>	제품생산량 (t)

CBAM 이행규정 부속서 III 섹션 F에 직접 귀속배출량과 간접 귀속배출량에 대한 산정식이 있습니다.

직접 귀속배출량		간접 귀속배출량	
$AttrEm_{Dir} = DirEm + Em_{H,imp} - Em_{H,exp} + WG_{corr,imp} - WG_{corr,exp} - Em_{el,prod}$		$AttrEm_{indir} = Em_{el,cons}$	
<i>AttrEm_{Dir}</i>	직접 귀속배출량	<i>AttrEm_{indir}</i>	간접 귀속배출량

$DirEm$	직접배출량 (섹션 B 참조)	$Emel,cons$	공정과정 내에서 소비되는 전력에 상응하는 배출량 (섹션 D 참조)
EmH,imp	공정과정에 유입된 측정가능한 열에 상응하는 배출량 (섹션 C 참조)		
EmH,exp	공정과정에서 배출된 측정가능한 열에 상응하는 배출량 (섹션 C 참조)		
$WG_{corr,imp}$	다른 공정과정으로부터 유입된 폐가스를 소비하는 공정과정의 직접 귀속배출량		
$WG_{corr,exp}$	공정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가스 양에 상응하는 배출량		
$Emel,prod$	공정과정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의한 배출량 (섹션D 참조)		

EU에 CBAM 적용제품을 수출하려는 국내기업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CBAM 이행규정에서 요구하는 제품의 내재배출량에 대한 주요 데이터를 모니터링해서 EU 수입업자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약하면, 국내기업들은 다음 정보에 대해 모니터링해서 EU 수입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직접배출량
- 열/냉각열에 의한 직접 배출량
- 공정과정에 소비되는 전력에 의한 간접배출량
- 투입물질(전구체)의 내재배출량
- CBAM 이행규정 부속서 IV 섹션 2에 따른 추가 변수
- 제품 원산지국에 지불해야 할 탄소 가격에 대한 정보

시사점

CBAM 적용대상 품목이 확대(정유, 석유화학, 플라스틱)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 전환기간이 끝나면 내재배출량이

공인된 검증기관에 의해 검증될 것을 보장하는 의무도 추가됩니다. CBAM 적용제품을 EU로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들을 위한 가이드([링크](#))에서 집행위는 수출업자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내재배출량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론 및 데이터 집계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해 부과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사실상 관세에 더해, 탄소배출량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 보고의무, 검증 의무가 CBAM 적용제품을 EU에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부과된 것입니다. 이에 대응해 국내기업은 신속히 MRV (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시스템을 구축해서 무역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ESG 통상 정책 · 규제 대응 핸드북\(KOTRA & 지평, 2022. 12. 29.\)](#)

[센터 업무] 주요업무

맞춤형 통상 정보제공

CBAM을 포함한 통상규제 정보를 저렴한 비용에 제공

특히 ESG 통상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 및 미국의 통상규제 정보를 적시에 제공

통상이슈 자문 및 솔루션 컨설팅

CBAM이 해당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문해주고 관련 솔루션 제공

EU 공급망실사법,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 IRA, 강제노동 규제 등 대상 여부 및 규제 정보 검토 및 대응방안 컨설팅

통상 컴플라이언스 구축 컨설팅

통상 리스크 예방, 식별, 대응을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에 통합하는 컨설팅 제공

법무법인(유) 지평 통상자문센터

임성택 대표변호사/ESG센터장	T. 02-6200-1746 E. stl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T. 02-6200-1841 E. cwmin@jipyong.com
이준희 ESG센터 전략그룹장	T. 02-6200-1966 E. jhlee3@jipyong.com
정민 PL/수석연구원	T. 02-6200-1712 E. mchung@jipyong.com
이주미 PL/연구위원	T. 02-6200-1713 E. leejm@jipyong.com
강보원 연구원	T. 02-6200-0642 E. bwk@jipyong.com